

#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

(이종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08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4월 6일

발 의 자 : 이종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·성중기·송재형  
신건택·우미경·우창운  
이명희·이복근·이상묵  
이석주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국기법」,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,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며,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과 국기의 점검·관리 권장, 가로기 게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이고,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국기의 점검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국기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[별첨 1]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청결한 국기 게양·관리 및 국기선양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민국의 국기”(이하 “국기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2. “국기 선양”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가로기”란 가로(街路)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.

제3조(국기의 게양일)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제4조(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)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

라 한다) 및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권자
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
 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국가유공자
 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고엽제 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5.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「주민등록법」상 거주지가 시 관할구역 내인 사람
  6.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시장 및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시장 및 구청장은 국기 계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5조(국기의 점검·관리) 시장 및 구청장은 국기를 계양하는 사람이 국기·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.

제6조(가로기 게양) ① 시장 및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.

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 및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시장 및 구청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8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「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」

##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4조(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), 제5조(국기의 점검·관리), 제6조(가로기 게양), 제7조(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)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, 자치구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제4조(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) 규정에 따른 비용만 발생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# 가. 대상

-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(제4조)에 해당하는 국기의 무상 보급, 교육·홍보를 위한 예산지원, 및 포상과 관련한 비용
- 단,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특성상 대상, 범위 등에서 구체성이 없어 명시적 재정지원이 곤란한 사업이거나, 기 시행 중인 사업이나 유사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추계대상 제외 사유	추계대상 제외 사업
지원대상·규모·범위 등의 구체성이 없이 단순 조례근거 규정을 명시한 사업	· (제4조 제3항)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.
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(“시민 시상제도 운영사업비”의 사무관리비 편성)	· (제4조 제4항)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자치구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	· (제5조) 국기의 점검·관리 · (제6조) 가로기 게양 · (제7조)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

나. 전제

- 무상보급 대상자 수는 첫해년도 건수를 기준으로 5차년도까지 비용 산정
- 무상보급 대상자 중 중복 지급에 대한 변수는 산정하지 않음
- 무상보급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단 혼인신고자의 경우는 매년 비용 산정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16~2020년)

라. 방법

- 무상보급 대상자 수 × 태극기 단가 (4,000원)

※ 산출근거 :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의 보급형 규격(600mm×900mm) 판매가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≍ 4,119,344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16년)	(2017년)	(2018년)	(2019년)	(2020년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국기의 게양관리 및선양 (제4조)	3,082,176	259,252	259,252	259,252	259,252	4,119,344
	소계(b)	3,082,176	259,252	259,252	259,252	259,252	4,119,344
□ 총 비용(b-a)		3,082,176	259,252	259,252	259,252	259,252	4,119,344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 
담당관  
예산분석팀장  
주무관

예산정책담당관  
남승우  
유제천  
강평선

☎ 02-3705-1279, e-mail(pskang74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 대상

구 분	지급대상	자료 출처	비고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권자 세대	163,107건	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<2015.12월 기준>	1회 지급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	393,380건	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통계 <2015.12월 기준>	
국가유공자	141,792건	국가보훈처 등록과 통계 <2015.12월 기준>	
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	7,442건	국가보훈처 등록과 통계 <2015.12월 기준>	
주거지가 시 관할 구역내 혼인신고자	64,823건	통계청 2014 인구동향조사	매년 지급대상
합 계	770,544건		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무상보급 대상자 수 × 태극기 단가(4,000원)
- 무상보급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단 전입자 및 혼인신고자의 경우는 매년 산정
- 전입세대 및 혼인신고자 건수는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
- 무상보급 대상자 수 × 태극기 단가(4,000원)
  - 1차년도 : 770,544건 × 4,000원 ≒ 3,082,176천원
  - 2차년도 이후 : 64,823건 × 4,000원 ≒ 259,252천원

연도 구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계
지급대상자 수	770,544건	64,823건	64,823건	64,823건	64,823건	1,029,836건